

어선 []건조 []건조발주 허가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해양수산부: 4일 시·군·구: 3일
소유자	성명(법인명)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
	주소 (전화번호)		
건조어선	주요치수(m) 길이: 너비: 깊이:	선체재질	[]강 []목 []강화플라스틱(FRP) []그 밖의 재질()
	총톤수 톤	추진기관	기관 마력 대
	선적항	어업의 종류	
추진계획	착공예정일 년 월 일	준공예정일 년 월 일	
	재원구분 [] 자기부담 만원 [] 정부지원 만원		
	건조장소	조선소명	
건조사유			

「어선법」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해양수산부장관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「어선법 시행규칙」 별표 20 또는 조례에 따름
------	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유의사항

1. 벌칙규정

어선의 건조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하거나 건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

2. 어선의 건조·건조발주 허가기관

- 가. 해양수산부장관
- 1)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
 - 2)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,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
 - 3)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
 - 4)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·시험·조사 또는 지도·감독에 사용할 어선
- 나.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
- 가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

3. 그 밖의 유의사항

- 가. 건조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총톤수의 측정을 받아야 합니다.
- 나. 건조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어선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은 관할 등기소에 선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